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 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당시 배우자, 자녀와 그 배우자,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에 추가함(안 제2조제2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